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·심사·지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기록 등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,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」이 개정(법률 제17120호, 2020. 3. 24. 공포, 2020. 9. 25 시행) 됨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,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공 요청 자료 등 규정 (안 제19조 신설)

- 1)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국가부담 진료비 청구·심사·지급 등 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계 행정기관,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함 (안 제19조제1항 및 별표 1 신설)
- 2) 자료의 제공을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함을 규정 (안 제19조제2항)

- 3)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디스켓 등 형태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 (안 제19조제3항)
- 4)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진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안 제19조제4항)
- 5)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용도로 조회·사용 및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및 누설 금지 규정 (안 제19조제5항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 (제공 요청 자료 등)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

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근거 및 사유, 제출 자료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, 자기테이프, 마이크로필름,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 처리와 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

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·사용하거나

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제공 요청 자료(제19조제1항 관련)

1. 「국민건강보험법」(이하 이 호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
가. 제8조부터 제11조에 따른 가입자 자격의 취득·변동·상실 시기 등에 관한 자료
나.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산서·영수증, 진료비 세부산정내역
다. 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시설, 장비, 인력 등 요양기관 신고 현황에 관한 자료
라. 법 제63조에 따른 요양급여등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 관한 자료
마. 법 제98조, 제99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내역에 관한 자료
2. 「의료급여법」 제28조, 제29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내역에 관한 자료
3. 「의료법」(이하 이 호에서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
가. 법 제17조,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진단서, 처방전, 진료기록부 등
나. 법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에 관한 자료
다. 법 제64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자료
4. 「약사법」 제20조,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약국개설 등록증, 처방전, 조제기록부 등
5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, 심사결과 및 조정내역에 관한 자료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9조 (제공 요청 자료 등)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”란 별표 1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.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 근거 및 사유, 제출 자료내역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 ③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,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자료가 디스켓, 자기테이프, 마이크로필름,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태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 ④ 공단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제1항에 따른 자료

	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정보 시스템을 구축·운영 할 수 있다. ⑤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·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44